발간등록번호 31-9735031-000663-14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27호 2013. 12. 27.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

– 출입관리 · 시설관리 · 위해환경관리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현장조사보고서 Vol. 27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

- 출입관리·시설관리·위해환경관리를 중심으로 -

조인식(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2013. 12. 27.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요 약

박근혜정부가 설정한 국정목표 중에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현이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의 조성이 제시되었다. 국가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이지만, 아직도 이들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범죄의 위험에 일부 노출되어 있다.

학교안전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위험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안전은 학교폭력, 학교급식,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관리 등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이 보고서는 학교안전과 관련된 시설과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 초점을 맞춰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범죄와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을 발급하는 장소를 마련하고 출입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퇴교 요청을 거부한 외부인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고성능 CCTV로 교체하고,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초등학교의 CCTV는 지방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CCTV는 학교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데, 학생과 교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를 건물 내부에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 들어서는 유해시설과 금지행위를 심의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해시설의 지정과 해제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조성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정화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있는 학교안전 관련 조항들을 통합하여 학교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법률에 있는 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조항을 이동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학교안전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안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 학부모, 관계기관은 학교안전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

차 례

□ 요약

Ⅰ. 서론 / 1

Ⅱ. 학교안전 관련 법령과 현황 / 4

1. 학교의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한 법령과 현황 ····· 4
가. 학교의 출입자 관리와 인력 관련 법령과 규정 ····· 4
나. 학교의 외부 출입자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 관련 현황 ····· 6
2.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련 법령과 현황 ····· 11
가. 학교 CCTV 관련 법령과 규정 ····· 11
나. 학교 CCTV 설치 현황 ····· 14
3.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련 법령과 현황 ····· 17
가.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련 법령 ····· 17
나.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련 현황 ····· 21

Ⅲ. 외국의 학교안전 관련 사례 / 24

1. 외부인의 학교출입 관련 규제 ····· 24
가. 미국 ····· 24
나. 일본 ····· 27
다. 영국 ····· 28
2. 외국의 학생보호인력 관련 사례 ····· 30
가. 미국 ····· 30
나. 독일 ····· 34
3. 외국의 학교 CCTV 관련 사례 ····· 36

가. 캐나다 ····· 36
나. 영국 ····· 37
4. 외국의 학교안전 관련 사례 시사점 ····· 38

Ⅳ. 학교안전 관련 문제점과 개선과제 / 40
1.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 ····· 40
가.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의 문제점 ····· 40
나. 학교의 출입관리 개선을 위한 과제 ····· 43
2. 학교의 CCTV의 운영과 관리 ····· 45
가. 학교의 CCTV 설치와 운영 관련 문제점 ····· 45
나. 학교 CCTV 개선을 위한 과제 ····· 47
3. 학교 주변 위해환경 관리 관련 ····· 49
가. 학교 주변 위해환경 관리의 문제점 ····· 49
나. 학교 주변 위해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 51
4. 학교안전 관련 법률 체계 관련 ····· 53
가. 학교안전 관련 법률 체계의 미비 ····· 53
나.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 54

Ⅴ. 결론 / 56

□ 참고문헌

□ 부록

표 차 례

[표 1] 「학교 출입증 및 출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5
[표 2] 학교급별 경비실 설치 현황 ····· 6
[표 3] 초·중·고등학교의 담장 없는 학교 현황 ····· 7
[표 4] 연도별 학생보호인력 현황 ····· 8
[표 5] 학생보호인력의 비교 ····· 9
[표 6] 시·도지역별 학생보호인력 배치 현황 ····· 10
[표 7] 「영상정보처리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13
[표 8] 학교급별 CCTV 설치현황 ····· 14
[표 9] 지역별 CCTV 설치 현황 ····· 15
[표 10] 화소별 CCTV 설치현황 ····· 16
[표 1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 19
[표 1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의 주요 내용 ····· 20
[표 1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현황 ····· 22
[표 14] 정화구역 내 불법업소 조치 현황 (2012년) ····· 23
[표 15] 미국의 학교경찰관의 주요 업무 ····· 32
[표 16] 통합관제센터 연계 추진 현황 ····· 46
[표 17] 학교안전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의 목적 ····· 54

그 림 차 례

[그림 1] 학교의 외부인 출입증 예시 ····· 4
[그림 2]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 14
[그림 3]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예시 ····· 19
[그림 4] OO중학교의 정문 ····· 40
[그림 5] OO초등학교의 학생보호인력 상주 공간 ····· 43
[그림 6] OO중학교의 당직실의 CCTV 모니터 화면 ····· 46
[그림 7] OO중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의 유해환경 ····· 50

Ⅰ. 서론

□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학교의 주변에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교육환경의 조성에 저해가 되는 시설이 있음

○ 학교의 일과시간 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10대가 고등학생 교실에 침입하여 여학생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1], 인천의 여자중학교에서는 외부인이 화장실에 침입해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사고가 발생함[2]

○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수가 부족해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모두 녹화하지 못하며, CCTV를 모니터링하는 인력과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3]

○ 일부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의 조성에 좋지 않은 유해한 업소들이 있어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

□ 국가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음

○ 학생과 교직원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정책과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짐

---

1) 연합뉴스, 「지켜지지 않는 '안전학교 정책' 여고생 납치 불렀다」, 2013년 5월 8일자.
2) 경인일보, 「전담 경비원 없는 학교 대다수 외부인 침입 범죄 그대로 노출」, 2013년 7월 17일자.
3) KBS, 「학교 CCTV, 어두운 밤 시간대 무용지물」, 2013년 6월 20일자.

□ 학교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학교급식,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학교 주변의 환경, 학교의 외부인 출입 관리 등 범위가 넓고 다양함

○ 학교안전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위험이나 사고[4]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음[5]

□ 본 보고서는 학교안전 중에서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와 이를 담당하는 인력,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학교 주변의 위해환경으로 한정함

○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은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는 다루지 아니함

□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안전과 관련된 국내의 법·제도적 현황(II장) 및 외국의 사례 조사(III장),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학교안전 관련 시설·위해환경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입법적·정책적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함(IV장)

---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5) 이혜숙,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안전 관리방안 연구- CCTV 및 학교보안관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012., pp.2-3.

□ 학교안전과 관계된 학교출입 관리, 학교의 CCTV설치와 운영, 학교주변 위해환경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관계자와 인터뷰를 실시함

○ 현장조사의 일시와 방문기관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12월 9일 서울 OO교육지원청 및 OO중학교
- 2013년 12월 13일 경기도 OO교육지원청, OO초등학교, OO중학교

Ⅱ. 학교안전 관련 법령과 현황

1. 학교의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한 법령과 현황

가. 학교의 출입자 관리와 인력 관련 법령과 규정

□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제1호[6]에 의거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을 시행함

○ 교육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하 '학교 출입증 및 출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학교 출입증 및 출입 가이드라인」은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은 [표 1] 참조)

[그림 1] 학교의 외부인 출입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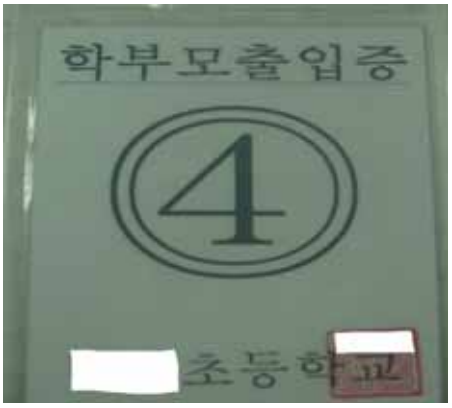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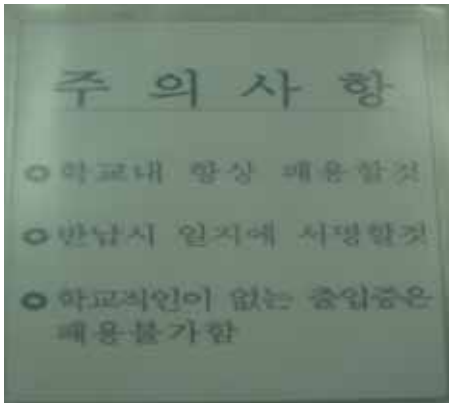

6)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제1호의 세부 내용은 본문 12페이지 참조

[표 1] 「학교 출입증 및 출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3조(적용범위)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 적용함 - 가이드라인은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과 방과 후 교육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 동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제5조(출입증의 종류)	1. 일반출입증(일반차량출입증 포함) 2. 일일방문증(일일차량출입증 포함)
제6조(발급권자)	-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학교의 장임을 명시함 - 출입증 발급 업무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인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함
제12조(관리인력·업무)	학교 출입 관리 업무는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등)이 경비실에서 수행하며, 학교의 시설·인력 수급 사정에 따라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해 지정된 별도의 인력이 별도의 장소에서 학교 출입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학생보호인력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하여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보호인력 관련 규정을 명시함

○ 동법 제20조의5는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학생보호인력은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청원경찰 등으로 다양하며 대부분의 학생보호인력이 학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함

나. 학교의 외부 출입자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 관련 현황

(1) 학교의 경비실과 담장 설치 현황

□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입증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중 하나인 초·중·고등학교의 경비실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11,567개의 학교에 총 3,714개의 경비실이 설치되어 설치비율은 32.1% 정도임

- 초등학교의 설치비율은 38.2% 정도, 중학교의 설치비율은 18.8% 정도, 고등학교의 설치비율은 29.9% 정도, 특수학교의 설치비율은 51.9% 정도임
- 경비실의 설치비율은 특수학교가 51.9%로 가장 높으며, 초등학교 38.2%, 고등학교 29.9%, 중학교 18.8%의 순임

[표 2] 학교급별 경비실 설치 현황

(단위: 개, 교, %)

구분	전체학교 수	경비실 설치학교 수	경비실 설치비율
초등학교	5,910	2,258	38.2%
중학교	3,175	597	18.8%
고등학교	2,320	775	29.9%
특수학교	162	84	51.9%
소계	11,567	3,714	32.1%

주: 2013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3.9.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학교에 담장이 있으면 외부인의 출입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200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담장을 허물었음

○ 2013년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1,567개교 중 담장이 없는 학교는 2,218개교로 담장이 없는 학교의 비율은 19.2%임

- 초등학교 중에서 담장이 없는 학교는 1,287개교(21.8%), 중학교 중에서 576개교(18.1%)에 담장이 없으며, 고등학교 중에서 담장이 없는 학교는 337개교(14.5%), 특수학교 중에서 18개교(11.1%)에 담장이 없음

[표 3] 초·중·고등학교의 담장 없는 학교 현황

(단위: 개교, %)

구분	전체 학교수	담장 없는 학교수	담장 없는 학교 비율
초등학교	5,910	1,287	21.8%
중학교	3,175	576	18.1%
고등학교	2,320	337	14.5%
특수학교	162	18	11.1%
소계	11,567	2,218	19.2%

주: 2013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3.10.

(2) 학생보호인력의 현황

□ 학생보호인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3년 4월 기준으로 학교 안전 담당인력은 11,197명임

○ 2013년 4월 기준으로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한 학교의 수는 9,007개교로 전체 학교 11,567개교의 77.8% 정도임

○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학생보호인력은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민간경비, 청원경찰 등이 있음

[표 4] 연도별 학생보호인력 현황

(단위: 개교,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4월
배치학교	3,104	6,562	8,002	8,576	9,007
배치인원	3,243	7,589	9,517	10,834	11,197

주: 2013년 4월 기준임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3.9.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학생보호인력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배움터지킴이는 전국의 8,088개 학교에 총 9,229명, 학교보안관은 575개교에 총 1,195명, 민간경비는 657개교에 총 763명, 청원경찰은 10개의 학교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학생보호인력 간의 비교는 다음과 같음

[표 5] 학생보호인력의 비교

구분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청원경찰	민간경비
업무 내용	- 학교폭력 예방 업무 - 학생 등하교시 학생보호 - 학교주변 순찰	- 학교폭력, 납치, 유괴 등 예방 - 외부인 출입관리·통제, 출입대장 등록 및 출입증 교부	- 학교폭력, 납치, 유괴 등 예방 - 외부인 출입관리·통제, 출입대장 등록 및 출입증 교부	- 학교폭력, 납치, 유괴 등 예방 - 외부인 출입관리·통제, 출입대장 등록 및 출입증 교부
사업 주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로 형태	위촉직 자원봉사자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근무 기간	연 10개월 (260일 이내)	연 10개월	계약조건에 따라서 상이함	계약조건에 따라서 상이함
근무 보수	월 130여만 원	일 4만원 (월 80여만 원)	계약조건에 따라서 상이함	계약조건에 따라서 상이함
배치 현황	9,229명	1,195명	763명	10명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2013.11.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 학생보호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비율은 전체 학교의 수 대비 77.8% 정도임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8개 지역의 학교의 학생보호인력 배치 비율은 100%로 학교 당 최소 1명의 학생보호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 인천의 학생보호인력 배치 비율은 97.4% 정도이며, 충북은 95.4%, 충남은 82.1%, 경남 78.7%, 경기 63.9%, 전남 63.1%, 경북 62.3%, 강원 52.7%, 전북 45.7%임

○ 전국의 17개의 시・도 중에서 8개 지역의 학교는 학생보호인력이 100% 배치가 되어 있으며, 인천과 충북은 90% 정도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충남과 경남은 80% 정도, 경기·경북·전남은 60% 정도의 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강원과 전북 지역은 50% 정도의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표 6] 시·도지역별 학생보호인력 배치 현황

(단위: 개교, 명, %)

지역	배움터 지킴이		민간경비 (주간)		청원경찰		기타			총계		
	학교	인원	학교	인원	학교	인원	구분	학교	인원	학교	인원	비율
서울	772	908	-	-	-	-	학교 보안관	557	1,164	1,329	2,072	100%
부산	629	631	117 (117)	117	1(1)	1	기타	51	93	629	749	100%
대구	441	704	-	-	1(1)	1	기타	154	445	441	705	100%
인천	429	428	73 (13)	75	1	1	기타	17	157	490	504	97.4%
광주	308	350	50 (50)	50	-	-		-	-	308	400	100%
대전	297	594	1	1	1(1)	1		-	-	298	596	100%
울산	202	249	35 (2)	35	-	-	기타	24	80	235	284	100%
세종	39	51	-	-	-	-		-	-	39	51	100%
경기	1,400	1,424	43	48	1	1	기타	170	541	1,444	1,473	63.9%
강원	242	242	111 (17)	111	-	-	기타	108	203	336	353	52.7%
충북	455	589	-	-	1	1		-	-	456	590	95.4%
충남	584	650	4	4	1(1)	1	기타	73	172	588	655	82.1%
전북	252	252	99	198	-	-		-	-	351	450	45.7%
전남	508	508	-	-	1	1	학교 보안관	18	31	527	540	63.1%
경북	589	689	5	5	1	1	기타	341	431	595	695	62.3%

지역	배움터 지킴이		민간경비 (주간)		청원경찰		기타			총계		
	학교	인원	학교	인원	학교	인원	구분	학교	인원	학교	인원	비율
경남	754	754	119 (119)	119	1(1)	1	기타	204	211	754	874	78.7%
제주	187	206	-	-	-	-	기타	-	35	187	206	100%
총계	8,088	9,229	657 (318)	763	10(5)	10		575	1,195	9,007	11,197	77.8%

주: 1) 2013년도 4월 기준임

2) 민간경비와 청원경찰 배치학교 부분에 (괄호)는 배움터지킴이와 민간경비가 중복되어 배치된 학교의 수를 의미함

3) 기타의 경우 녹색어머니회, 은빛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하루에 1~2시간 정도 근무하여 정규 학생보호인력으로 간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학교보안관만 학생보호인력으로 인정함

4) 배치율은 배움터지킴이, 민간경비, 청원경찰 학교 수를 더하고 민간경비 부분의 (괄호)에 있는 학교의 수를 차감한 후에 해당 지역의 전체 학교의 수로 나눠서 계산한 비율임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3.9.

2.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련 법령과 현황

가. 학교 CCTV 관련 법령과 규정

□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관련 규정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교육부는 2012년 11월 5일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2013년 1학기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시작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제4조는 영상정보 보호원칙, 제5조는 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제6조는 책임관 등의 지정, 제9조는 설치 업

체 및 기기의 선정, 제10조는 필수 감시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7] 「영상정보처리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함
제5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함
제6조(책임관 등의 지정)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함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인력을 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음
제9조(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함 1.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무상 A/S 1년 이상, 유상 A/S 5년 이상 가능할 것 3. 초등학교의 경우 통합관제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함
제10조(필수 감시지역)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구역을 필수로 감시함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학교 주/부출입문, 교사(校舍) 주/부출입문 포함) 2. 사각지역(위험 및 우범) :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3. 중요지역 및 중요실

나. 학교 CCTV 설치 현황

□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1,567개교 중에서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수는 11,466개교로 설치 비율은 99.1% 정도임

- CCTV는 초등학교 5910개교 중에서 5,886개교(99.6%), 중학교 3,175개교 중에서 3,134개교(98.7%), 고등학교 2,320개교 중에서 2,290개교(98.7%), 특수학교 162개교 중에서 156개교(96.3%)에 설치되어 있음

[그림 2]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표 8] 학교급별 CCTV 설치현황

(단위: 개교, %, 개)

학교급	전체학교수	설치학교수	설치비율	설치대수
초등학교	5,910	5,886	99.6%	54,399
중학교	3,175	3,134	98.7%	34,110
고등학교	2,320	2,290	98.7%	40,945
특수학교	162	156	96.3%	1,655
총계	11,567	11,466	99.1%	131,109

주: 1) 설치비율은 설치학교수를 전체학교수로 나눈 비율임
2) 2013년 4월 기준임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3.10.

□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개 시·도의 학교 CCTV 설치 비율은 100%임

○ 그 외 지역은 서울 99.6%, 경기 99.6%, 광주 99.0%, 세종 94.9%, 전북 89.5% 등으로 매우 높은 편임

[표 9] 지역별 CCTV 설치 현황

(단위: 개교, %, 개)

구분	학교수	설치 학교수	설치 비율	설치 대수
서울	1,326	1,321	99.6%	18,129
부산	629	629	100%	7,853
대구	441	441	100%	5,354
인천	502	502	100%	7,718
광주	308	305	99.0%	2,983
대전	298	298	100%	4,066
울산	235	235	100%	3,015
세종	39	37	94.9%	607
경기	2,257	2,247	99.6%	25,398
강원	638	638	100%	5,536
충북	478	478	100%	6,478
충남	715	715	100%	7,761
전북	768	687	89.5%	6,461
전남	834	834	100%	7,345
경북	954	954	100%	9,475
경남	958	958	100%	10,892
제주	187	187	100%	2,038
계	11,567	11,466	99.1%	131,109

주: 1) 설치비율은 설치학교수를 전체학교수로 나눈 비율임
2) 2013년 4월 기준임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3.10.

□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화소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화소수 기준으로 구분하면, 40만 화소 이하는 총 22,157대로 전체의 16.9% 정도 이며, 41만~50만 화소는 96,266대로 73.4% 정도이고, 50만 화소 이상은 12,686대로 9.6% 정도임

[표 10] 화소별 CCTV 설치현황

(단위: 수, %)

학교급	40만 미만	41~50 만미만	51~100만 미만	101~200 만미만	201만 이상
초등학교	7,753 (14.3%)	41,615 (76.5%)	1,939 (3.6%)	1,718 (3.2%)	1,374 (2.5%)
중학교	5,988 (17.6%)	24,561 (72.0%)	1,642 (4.8%)	1,045 (3.1%)	874 (2.5%)
고등학교	8,016 (19.6%)	29,005 (70.8%)	2,026 (4.9%)	1,050 (2.6%)	848 (2.0%)
기타학교	400 (24.2%)	1,085 (65.6%)	46 (2.8%)	54 (3.3%)	70 (4.2%)
총계	22,157 (16.9%)	96,266 (73.4%)	5,653 (4.3%)	3,867 (2.9%)	3,166 (2.4%)

주: 1) 비율(%)은 화소별 CCTV의 수를 각급 학교의 총 CCTV의 수로 나눈 비율임
2) 2013년 4월 기준임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3.10.

3.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련 법령과 현황

가.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제5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동법 제5조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제6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와 시설을 규정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7]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8]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9]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제6호, 제7호, 제8호의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의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그 밖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도의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명시함

○ 1968년 시행령 제정 당시 정화구역의 범위는 서울·부산 및 시지역은 학교로부터 300미터 이내, 기타지역은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였음

[표 1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구분	주요 내용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설정함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함

[그림 3]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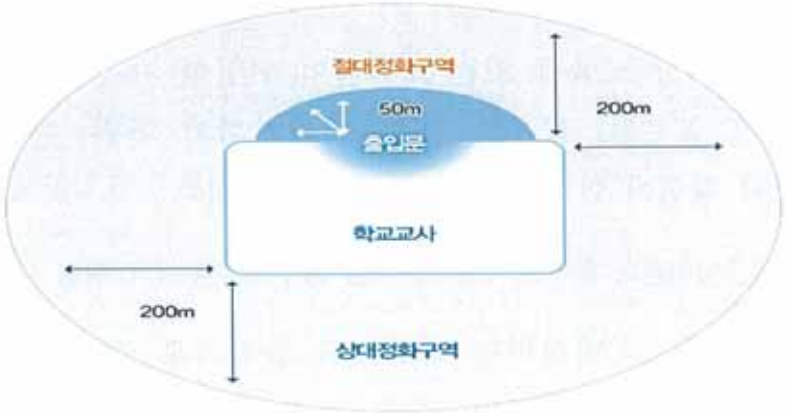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정화구역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2010.6.

□ 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는 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10)]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함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위원의 임기, 제7조의3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4는 위원의 해임·해촉 관련 사항을 규정함

○ 정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위원회 설치	교육지원청
위원회 구성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요건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위원회 운영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회 임기	위촉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함

10)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 내의 유해시설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법 제6조제3항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벌칙은 동법 제19조에 규정함

- 동법 제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학교 주변 유해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동법 제19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8조는 학교 주변 유해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함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교육장은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2항은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함

나.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련 현황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 있는 각종 유해시설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정화구역에 총 41,545개의 유해시설이 있음

○ 정화구역 내에 가장 많이 있는 업소는 유흥/단란 업소가 총 12,166개(29.2%)가 있으며, 노래연습장 9,814개(23.6%), 당구장 7,070개(17.0%), 호텔/숙박업 6,932개(16.6%), PC방 3,214개(7.7%)의 순으로 있음

-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 총 41,545개소 중에서 유흥/단란업소, 노래연습장, 당구장, 호텔/숙박업, PC방이 총 39,196개소로 전체의 94.3% 정도를 차지함

- 정화구역 업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기 다섯 개 유형의 업소 외에 게임제공업 783개(1.8%), 만화가게 343개(0.8%), 무도학원/무도장 299개(0.7%), 압축・천연・액화가스저장소 298개(0.7%), 비디오감상실업 241개(0.5%), 신변종업소 159개(0.3%) 등이 있음

[표 1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총계	비율	구분	총계	비율
가스제조저장소	298	0.71%	PC방	3,214	7.7%
도축/화장/납골	1	-	중기탕	4	-
폐기물수집장소	29	0.06%	만화가게	343	0.82%
폐기물처리시설	18	0.04%	무도학원/무도장	299	0.71%
유흥/단란	12,166	29.2%	노래연습장	9,814	23.6%
호텔/숙박업	6,932	16.6%	담배자판기	9	-
당구장	7,070	17.0%	비디오감상실업	241	0.58%
경마/경륜장	10	0.02%	복합유통업	87	0.2%
성인용품	22	0.05%	미니게임기	19	0.04%
전화방/화상방	26	0.06%	신변종업소	159	0.38%
게임제공업	783	1.8%			
업소의 총계				41,545	

주: 2013년 4월 기준임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3.9.

□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 있는 유해업소에 대한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정화구역 내에 있는 불법업소에 대해서 2012년도 기준으로 정화요청이 934건, 고발 142건, 기타 16건 등 총 1,092건의 요청과 고발이 있었음

○ 2012년도 기준으로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 대한 정화요청과 고발은 총 1,092건 있었으나, 실제 조치는 189건으로 정화요청과 고발건수 대비 17.3%임

[표 14] 정화구역 내 불법업소 조치 현황 (2012년)

(단위: 건)

구 분	정화요청 / 고발건수				유해업소 조치결과					
	정화요청	고 발	기타	계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허가취소	정화구역조정 등	계
서 울	484	93	-	577	40	2	1	-	9	52
부 산	229	28	-	257	89	2	1	-	-	92
대 구	33	5	-	38	-	-	-	-	-	-
인 천	34	4	-	38	2	1	-	-	-	3
광 주	5	2	-	7	-	-	-	-	1	1
대 전	-	-	-	-	-	-	-	-	-	-
울 산	-	-	-	-	-	-	-	-	-	-
세 종	-	-	-	-	-	-	-	-	-	-
경 기	32	9	-	41	8	3	-	1	-	12
강 원	-	-	-	-	-	-	-	-	-	-
충 북	53	-	16	53	15	4	3	5	-	27
충 남	1	-	-	1	-	-	-	-	-	-
전 북	1	-	-	1	-	-	2	-	-	-
전 남	9	1	-	10	-	-	-	-	-	-
경 북	53	-	-	53	-	-	-	-	-	-
경 남	-	-	-	-	-	-	-	-	-	-
제 주	-	-	-	-	-	-	-	-	-	-
계	934	142	16	1,092	154	12	7	6	10	189

주: 1) 2012년도 기준임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3.4.

Ⅲ. 외국의 학교안전 관련 사례

1. 외부인의 학교출입 관련 규제

가. 미국

□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州)는 학교의 방문자가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 절차와 학교의 퇴교명령에 불응할 경우 받게 되는 조치를 명시한 법률[11]을 1982년도에 제정하여 학교의 출입 관리에 적용하고 있음

○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자의 이름, 주소, 직업, 방문자가 21살 이하면 나이를 포함하는 개인신상 정보와 학교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을 등록해야 함

○ 학교의 장이나 출입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방문자의 방문과 행동이 학생, 교사, 직원, 학교에 방해가 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학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공립학교의 출입문에는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 등록이 가능한 시간, 교장 및 교직원이 있는 장소까지 찾아가는 안내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받는 조치 등을 표기함

○ 학교의 장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담당하는 자가 학교를 출입한 외부인에게 학교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외부인이 이를 거부할 때 받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11)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s: 627 – 627.10, (최종 검색일: 2013.10.15.)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PEN&division=&title=15.&part=1.&chapter=1.1.&article=>

-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교도소에 구류하거나 $50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류와 벌금의 조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州)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있는 배닝고등학교(Banning High School)[12]는 학교 방문자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교를 방문하려는 자는 학교에서 출입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학교 방문을 위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학교 방문을 예약함

○ 학교 방문 출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하고 출입증을 받으며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의 장이나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음

○ 외부인은 학교의 장, 교사, 학교의 직원과 학교 방문을 위한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규칙에 나와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학교 방문을 마치고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학교 출입증을 반납함

○ 학교의 장과 담당자는 학교를 방문할 때 학교의 시설 중에서 어디까지 방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방문에 대한 허가를 결정함

○ 학교 방문자를 위한 규정은 교실을 가능한 조용하게 방문하고 떠나야 하며, 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학교 내에서의 어떠한 활동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적인 정보의 수집을 금지함

12) Banning High School 홈페이지, Visitor Policy (최종 검색일: 2013.10.15.) <http://www.banninghs.org/apps/pages/index.jsp?uREC_ID=119108&type=d>

□ 미국 뉴욕의 욘커스(Yonkers) 지역의 공립학교 규정은 학교의 방문자를 위한 규칙을 명시함[13)]

○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도록 권장하고,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방문자로 간주함

○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학교의 방문을 위해 학교 방문을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방문을 통보함

○ 학교의 방문을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과 관련된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고 방문을 위한 출입증을 받아서 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항상 패용하도록 하며, 학교의 방문을 마치고 출입증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함

○ 학기 중에 수업을 참관하고 싶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사전에 교사와 협의하여 예약을 하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 학교로부터 방문과 관련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나 출입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보고하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 함

○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는 방문자를 위한 규칙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방문자가 방문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학교를 떠나도록 함

- 학교를 방문한 자가 방문자 관련 규칙의 위반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불법침입으로 연행할 수 있음

13) Yonkers Public Schools, 「Code of Conduct」, pp.40-41. (최종 검색일: 2013.10.15.) <http://www.yonkerspublicschools.org/docs/about/code-of-conduct/coc_eng.pdf>

나. 일본[14)]

□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학교 내·외에서 범죄 혐의자에 의해서 어린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나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어린이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함

○ 「어린이 안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중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지역전체의 학교 안전체제정비 추진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학교 내·외를 순찰하여 학교와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경비를 수행함

□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부모, 지역 주민, 경찰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범죄 혐의자의 학교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제한하며, 등·하교 시를 제외하고는 교문에 자물쇠를 사용하여 관리함
-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학생들을 지도하여 안전을 확보함
- 학교에 외부자의 침입을 감시할 수 있는 센서 또는 모니터를 설치함
-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14) 송민영, 「일본의 학교안전 관련 동향 및 안전교육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2010.8.26.

○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의 동선을 학생이 활동하는 장소와 분리하고 외부인의 동선을 파악하도록 함
-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의 방문을 접수하는 장소를 설치하고 외부인임을 표시할 수 있는 리본이나 명찰을 패용하도록 함
-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면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함
- 교무실을 학교 방문자의 동선과 옥외 운동장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함

다. 영국[15)]

□ 영국의 웰샘프톤 잉글랜드 초등학교(Welshampton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는 외부방문자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부 방문자가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수석교사가 초청을 해야 하며, 방문의 목적과 방문하는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하여 수석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방문자는 학교를 방문할 때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학교는 방문자에게 방문자 관련 규정을 안내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학교의 출입을 관리하는 장소에 방문을 통보해야 하며 그 밖의 다른 곳을 통해서는 출입을 할 수 없음

15) Welshampton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13.10.15.) <http://www.welshampton.shropshire.sch.uk/index_htm_files/Visitors%20policy%20November%202010.pdf>

○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학교의 출입을 관리하는 장소에서 방문의 목적과 초청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학교의 출입을 담당하는 장소의 방문자 기록철에 관련 사항을 기입함

○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방문자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패용함

○ 학교는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위급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하는 절차와 규정을 담은 설명서를 배포함

○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학교의 방문을 허가한 자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하며, 외부인의 방문을 허가한 자는 방문자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서 방문자를 안내함

○ 외부인을 초청한 자는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방문자에 대한 책임을 짐

○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은 학교를 방문했을 때와 동일한 장소로 가서 방문자 기록철에 학교를 떠나는 시점을 기록하고 방문자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반납해야 함

□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방문자가 학교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학교를 방문했음을 나타내는 배지를 패용하지 않은 자가 발견이 되면 방문자의 신분과 방문 목적에 대하여 문의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을 안내하는 장소로 안내하여 방문자 기록철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배지를 교부받도록 함

○ 외부인이 학교의 방문자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를 즉시 떠날 것을 요청함

○ 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지 않는 자 또는 수상한 자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일 경우 학교를 떠날 것을 즉시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을 경고함

○ 학교에서 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지 않는 자 또는 수상한 자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학교에 새로운 교직원이 부임을 하면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함

○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에 대한 규정을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 등 모든 학교 관계자에게 홍보가 되도록 학교의 홈페이지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규정을 기술한 안내서를 교직원의 사무실에 배포함

2. 외국의 학생보호인력 관련 사례

가. 미국[16)]

□ 미국은 학교에 학교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경찰관(School Resource Officer; SRO)을 배치하여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16) Nathan James 외, 「School Resource Officers: Law Enforcement Officers in Schools」, *CRS Report for Congress*, June 23, 2013, pp.1-27.

○ 미국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경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17)]

학교경찰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경찰제도의 일환으로 경찰에 의해서 고용이 되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초・중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약물, 범죄조직 관련 업무 (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과 안전 관련 교육 (4)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사법제도의 개발 관련 업무 (5)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 관련 문제 해결과 범죄 예방 교육의 실시 (6) 학교 내・외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7) 학교의 범죄 관련 규칙과 제도의 개발과 개선을 위한 조언

○ 미국의 학교경찰관의 수는 1997년에 12,500명에서 2000년도에 19,000명, 2003년도에 20,000명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에 19,000명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도 기준으로 19,000 정도가 근무 중임[18)]

□ 미국 학교경찰관의 역할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학교경찰관은 안전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법의 집행을 담당하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에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담당함

17)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COPS) program, 42 U.S.C. §3796dd-8. (최종검색일: 2013.10.15.)
<http://www.gpo.gov/fdsys/pkg/USCODE-2010-title42/pdf/USCODE-2010-title42-chap46-subchapXII-E-sec3796dd-8.pdf>

18) Johanna Wald & Lisa Thurau, 「How Educators and Police Can Work Together More Effectively to Preserve School Safety and Protect Vulneerable Students」, A CHHIRJ Policy Brief, Institute for Race & Justice, 2010 March, p.1.

[표 15] 미국의 학교경찰관의 주요 업무

역할	주요 업무
안전전문가 및 법 집행자(Safety Expert and Law Enforcer)의 역할	- 학교의 요청으로 범죄에 연루된 자 연행 -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한 자에 대한 조치 실시 - 학생이 학교 밖에서 연루된 범죄에 대한 조치
문제해결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Problem Solver and Liason to Community Resources)의 역할	-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가장 먼저 대응 -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학교폭력이나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조치 - 학생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의 조성과 지역사회 사법체계의 개발
교육자(Educator)의 역할	-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

□ 미국의 학교에 학교경찰관을 배치하여 얻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음

○ 학교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경찰관은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교경찰관이 배치된 후에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학교의 건물과 학교 내·외 순찰의 실시로 인하여 학교안전이 강화됨
- 안전과 보안 관련 사항의 점검으로 인하여 학교안전이 강화됨
- 학생이 관계된 범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체포를 함
- 학생과 교직원이 신고한 범죄에 대한 조치를 실시함

○ 학교경찰관이 지역의 경찰과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협력함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기와 인질 관련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학교의 건물과 운동장의 안전에 대한 사항을 점검함

○ 학교경찰관은 지역의 경찰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의 교직원들에게 학교안전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함

□ 미국의 학교에 학교경찰관의 배치는 학교,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도 있음

○ 일부 학교의 교사와 직원은 학교안전을 담당하는 학교경찰관의 배치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음

○ 학교경찰관의 근무는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일부 학생은 학교경찰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

○ 학교경찰관의 배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

○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는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나 학교경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학생들이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사례가 발생함[19)]

19) Justice Policy Institute, 「Education Under Arrest: The Case Against Police in Schools」, (최종검색일: 2013.11.25.) <http://www.justicepolicy.org/uploads/justicepolicy/documents/educationunderarrest_executivesummary.pdf>

나. 독일[20]

□ 독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외부인의 학교 침입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에 민간경비나 경찰을 배치하는 학교경찰제도를 시행함

□ 독일의 베를린시 노이쾰른(Neukölln)구에서 도입한 학교경비용역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이쾰른(Neukölln)구는 민간경비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경비용역의 파견을 원하는 학교에 학교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력을 배치함

○ 민간경비용역 회사의 직원은 학교별로 배치가 되어 근무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소지하되 무기는 소지할 수 없음

○ 학교에 배치되는 민간경비용역 회사 직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외부인의 학교출입 통제, 교사와 약속을 한 외부인과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경우 행정실까지 동행, 학교 운동장과 교내 건물에 대한 수시 순찰, 쉬는 시간에 교문통제, 학교 내에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통지, 필요할 경우 학생과 외부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함

□ 독일의 함부르크시는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고자 'Cop4U(Cop for You, 이하 Cop4U)' 프로그램을 도입함

○ Cop4U 프로그램은 학교에 경찰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학교에 배치된 경찰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20) 오정한, 「소년구금제도와 학교경찰배치제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단기적 대응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7.11., pp.170-172.

- 학교의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순찰함
- 전일제 학교에서는 오후에도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함
-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협의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조언을 함
- 학교에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을 실시함
-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부모의 밤 행사와 교사·학부모협의회에 참석함

○ 학교에 배치되는 경찰의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학교에서 이틀 동안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과정은 주정부의 교원양성·교육개발연구소 산하 폭력방지 상담소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기획하고 시행함

- 2002년 10월 교육청, 직업·평생교육청, 함부르크 경찰청이 체결한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2003년 12월에 235명의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였으며, 2010년 5월 기준으로 237명의 경찰이 총 497개의 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함

○ 독일 함부르크시의 Cop4U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입된 학교경찰제도는 학교와 경찰 간에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포함한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

- 독일의 다른 주정부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학교폭력과 외부인의 학교 방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사례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

3. 외국의 학교 CCTV 관련 사례

가. 캐나다[21)]

□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州)는 학교에 CCTV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교는 CCTV가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를 하도록 함
- 학교의 CCTV는 특정 장소만 감시 하도록 설치하며, 만약 CCTV가 관리자에 의해서 회전이나 줌이 가능하면 CCTV가 감시하는 지역 이외 다른 곳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작을 금지함
- CCTV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은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통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며, CCTV의 모니터링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만 CCTV를 모니터링 하도록 함
- 학생과 교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을 금지함
-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 CCTV가 운영 중임을 인지하도록 함
- 학교는 CCTV를 통해서 개인정보 수집의 권한이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 목적을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에게 알리며, CCTV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표시함

21) Ann Cavoukian, 「Guideliens for Using Video Surveillance Cameras in Schools」,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Ontario, 2009.7.

- 학교 CCTV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 회사가 1년에 4차례 정도 학교를 방문하여 CCTV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학교는 CCTV의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영국

□ 영국의 일부 학교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과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란이 있음[22)]

○ 영국의 일부 학교는 교사들을 교육하고 행동이 불량한 학생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함

- CCTV에 저장된 내용은 한 달간 저장이 되며 학교의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저장된 내용에 접근이 가능함

○ 학교의 교실에 설치한 CCTV는 학교폭력 문제와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질 수 있음

- 학교의 교실에 있는 CCTV에 녹화된 장면이 필요한 자는 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CCTV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CCTV에 녹화된 장면을 전달함

○ 학교의 교실에 설치된 CCTV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교사들의 수업을 녹화하여 동료 교사들이 시청을 한 후에 수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교사의 효과적인 수업을 시청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음

---

22) Jessica Shepherd, 「Someone to watch over you」, The Guardian, 2009.8.4., (최종검색일: 2013년 11월 25일)
<http://www.theguardian.com/education/2009/aug/04/schools-cctv-surveillance>

- 교사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학교의 교실에 CCTV를 설치한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음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 했는지 CCTV에 녹화된 장면을 제공할 수 있음

○ 하지만,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교사와 학생도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음

- 학교의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학교가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나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CCTV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학생들이 CCTV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면 CCTV의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4. 외국의 학교안전 관련 사례 시사점

□ 외국의 학교는 외부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출입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함

○ 미국은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학교를 무단으로 출입한 외부인이 학교의 퇴교요청을 거부할 경우 받는 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일본은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지역사회, 경찰이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함

○ 영국의 학교는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며, 학교를 방문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출입증을 교부 받아서 착용을 하고 학교를 떠날 때 반납하고, 방문자가 학교의 방문자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교를 요청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신고함

□ 일부 국가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함

○ 미국의 학교경찰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학교경찰관이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우려와 일부 학생은 학교경찰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

○ 독일에서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도입한 Cop4U 프로그램은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여 학교폭력과 범죄의 예방, 학교의 외부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음

□ 외국의 학교는 학교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과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영국은 학교의 교실에 CCTV를 설치한 사례가 있음

○ 캐나다의 학교는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교에 CCTV를 설치한 회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작동상태를 점검하도록 함

○ 영국의 일부 학교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사의 수업을 모니터링하고,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나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함

- 하지만, 교실에 CCTV의 설치는 학생과 교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

Ⅳ. 학교안전 관련 문제점과 개선과제

1.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

가.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의 문제점

□ 학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의 담장과 외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교부하는 장소가 필요하나 기반 시설이 부족함

○ 학교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초등학교 38.2%, 중학교 18.8%, 고등학교 29.9%, 특수학교 51.9%로 낮은 편이며([표 6] 학교급별 경비실 설치 현황 참조)

-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의 발급과 외부인이 교직원이 안내를 하러 올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필요함

[그림 4] OO중학교의 정문

주: 학교의 정문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인이 출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함

- 학교 건물 내에 있는 장소에서 출입증 발급 업무를 할 경우, 외부인이 학교의 건물에 들어와서 출입증을 발급 받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담장이 없는 학교의 비율이 19.2% 정도임([표 7] 초・중・고등학교의 담장 없는 학교 현황 참조)

- 담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운동장의 모든 방향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우며, 출입증을 발급하기 위한 장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움

□ 학교의 외부인 출입 관리와 관련하여 무단으로 출입한자에 대한 조치가 관련 규정[23]에 명시되어 있으나 무단출입자를 통제하기에는 부족함

○ 학생보호인력이 학교 내에서 무단으로 출입한 자를 발견한 경우 학교의 교직원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한 자가 학생보호인력의 안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학교의 장이 학교를 출입한 외부인에게 퇴교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내리는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23)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2012.11. 5., 제20조(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를 발견 시 즉시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② 학생보호인력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하여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2013년도 1학기부터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나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함

○ 학교의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일부 학교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움

○ 학교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총 11,197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인력들이 출입증 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움

○ 학교 안전을 위한 인력의 대부분이 고령자로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서울 지역의 학교보안관은 평균 연령이 62.5세로 높은 편으로 외부인이 침입할 경우 이를 제압할 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 학교는 70세 이상의 인력을 학교보안관으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24)]

○ 학생보호인력은 처우가 부족하고 신분이 불안정하여 청·장년층을 고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학생보호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근무 시간은 1일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월 20일을 근무하고 보수는 1일 기준으로 30,000원에서 40,000원을 수령함

24) 이혜숙, 앞의 글, pp.136-137.

나. 학교의 출입관리 개선을 위한 과제

□ 외부인이 학교의 건물이나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 출입과 관련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담장이 없는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출입증을 교부하는 장소의 설치가 필요함

○ 경비실이 없는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장소를 학교의 건물 밖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5] OO초등학교의 학생보호인력 상주 공간

주: OO초등학교는 학생보호인력이 상주하는 공간을 정문에 배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는 장소로 활용함

□ 학교에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한 자와 퇴교를 거부한 자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학생보호인력이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한 자를 발견할 경우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지에 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한 자가 퇴교를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확충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5)]

○ 학생보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청·장년층이 학생보호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위한 출입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일부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할 경우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출입증 발급과 관련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시설 복합화가 이루어진 학교에 이용자가 출입하는 경우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 구역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실을 홍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25) 정귀영, 「학교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7권 제1호, 2011., pp.123-124.

2. 학교의 CCTV의 운영과 관리

가. 학교의 CCTV 설치와 운영 관련 문제점

□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함[26)]

○ 학교에서 각종 범죄와 사고의 징후가 CCTV 화면에 나타날 경우 즉시 개입을 해야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 CCTV설치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임

○ 학교의 안전을 위해 채용된 학생보호인력은 학교의 출입자 통제와 학교의 순찰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27)]

○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여 생활지도 교사, 행정실 직원 등을 CCTV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려움

□ 일부 초등학교의 CCTV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이들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학생들의 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함

---

26) 이혜숙, 앞의 글, p.126.

27) 배움터지킴이의 업무는 1) 학교 내·외에서 외부인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및 학생 간 폭력 예방활동과 순찰, 2)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에 대한 선도활동, 3) 외부출입자 관리와 출입증 교부, 4)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과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등임

○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제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표 16] 통합관제센터 연계 추진 현황

(단위: 교, 개소, 대)

구분	시·군·구 통합관제센터		연계된 통합관제센터		연계 학교수	연계 영상정보 처리개수
11년 실적	45개소		25개소		804개교	3,984대
12년 계획	26개소		36개소		815개교	4,396대
12년 실적	구축완료	구축중	구축완료	구축중	41개교	208대
	1개소	25개소	3개소	33개소		

주: 2012년도 실적은 9월 기준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2012.11.5.

[그림 6] OO중학교의 당직실의 CCTV 모니터 화면

주: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화소가 떨어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려움

□ 일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다수의 CCTV는 성능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감사원이 2012년에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50만 화소 미만일 경우 성능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움[28)]

○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99.1%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된 CCTV의 대부분이 50만 화소 미만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CCTV가 50만 화소 미만이면 학교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추후에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설치의 효과가 적음
- 전국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서 118,423개(90.3%)가 50만 화소 이하로 설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 CCTV의 대부분이 학교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교사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사고의 예방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함

○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 복도, 화장실 등 학교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으나, 학교에 설치된 CCTV의 대부분이 교사 밖에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

나. 학교 CCTV 개선을 위한 과제

□ 학교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확충하여 CCTV 설치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8) 감사원,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주요사업)」, 『감사결과보고서』, 2012.10.

○ 학교의 CCTV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을 증원하여 각종 범죄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일선 학교의 CCTV 담당자는 CCTV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고, CCTV의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CCTV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여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중·고등학교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학교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경우 CCTV 설치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여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CCTV의 최소 성능 기준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추후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화소가 높은 CCTV로 교체하고, 이를 위한 CCTV의 최소 화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학교의 건물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 교사 내의 복도, 계단, 후미진 곳에 CCTV를 설치하여 학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외부인의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학교의 교실이나 화장실 등에 CCTV를 설치하면 학생과 교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3. 학교 주변 위해환경 관리 관련

가. 학교 주변 위해환경 관리의 문제점

□ 정화위원회가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의 설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함

○ 학교마다 주변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화위원회가 유해시설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자율성을 부과하였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심의결과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 정화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결과가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정화위원회 심의에 활용하도록 함

-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위원회의 의견과 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심의에 활용함

○ 정화구역 내의 시설에 대한 심의를 받는 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신청한 자가 심의결과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음[29)]

○ 동일한 유해업소에 대하여 정화위원회가 다른 심의 결과를 도출하는 사례도 있어서 정화위원회를 위한 객관적인 심의 기준 도입에 대한 필요

29)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 1,847건 중에서 정화구역 관련이 1,407건(76.2%)으로 가장 많으며 2009년도의 경우 정화구역과 관련하여 196건의 행정소송과 심판이 제기됨, 손애리 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12., p.2.

성이 제기됨

[그림 7] OO중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의 유해환경

주: 학교 정문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교육환경 조성에 유해한 업소가 있음

□ 학교 주변 불법업소에 대한 정화요청 및 고발의 건수에 비하여 실제로 불법업소에 대한 조치가 적음

○ 2012년도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1,092건의 정화요청이 있었으나, 실제로 내려진 조치는 총 189건으로 요청건수 대비 17.3% 정도임

○ 학교나 교육장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여도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집행할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이 적음

□ 일부 유해시설의 경우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도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화구역 범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환경과 관계된 시설의 경우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30]

- 하지만,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을 강제할 수 없어서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움

○ 현행 법령에 설정되어 있는 정화구역의 범위를 일부 시설에 대하여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나. 학교 주변 위해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 학교 주변 금지행위와 시설을 심의하는 정화위원회를 위한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31]

○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시설과 행위를 심의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정화위원회가 학교 주변의 금지시설과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객관적인 연구를 통하여 유해시설 및 환경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32]

---

30) 고양시에 있는 OO초등학교는 학교로부터 350미터가 떨어진 곳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위치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아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31)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정화구역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학교보건법 부패영향평가』, 2010.6., pp.10-12.

32) 손애리 외, 앞의 글, pp.115-116.

-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유해시설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기준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학교 주변에 설치된 유해업소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교육장이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나 철거를 요청하면 이를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음

○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두 번 연속으로 받으면 업소를 폐쇄하고 시설을 철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33)]

□ 학교를 기준으로 200미터로 지정되어 있는 정화구역의 범위를 일부 시설에 대하여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일부 환경 관련 시설은 학교를 기준으로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도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 대하여 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시설에 대한 정화구역 범위의 조정은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적인 부분과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할 수 있

33) 서울 지역의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강남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여 정화구역 내의 불법 신·변종업소에 대하여 1회 단속만으로도 건물주·업주에게 통보하고 업장폐쇄 등의 조치와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유해업소 정화를 실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함, 서울강남경찰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척결계획」, 2013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실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경찰청은 전국 17개 경찰서로 시범운영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 경찰청, 「강남경찰서 시범운영 성공, 학교 주변 성매매업소 폐쇄·철거 전국으로 확대」, 2013.7.31.

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4. 학교안전 관련 법률 체계 관련

가. 학교안전 관련 법률 체계의 미비

□ 학교안전 관련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34)]

○ 학교안전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이들 법률의 제정 목적이 학교안전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항이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음[35)]

34) 제19대 국회의 학교안전 관련 입법 논의는 부록 참조

35) 김상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홍근의원실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2013.9.3., pp.44-51.

[표 17] 학교안전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의 목적

구분	법률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학교보건법」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 기존의 법률에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법률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보호인력 관련 내용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감독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경우 기존의 법률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안전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안전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체계를 만들어서 학교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를 안정적으

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의 학생의 안전대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의 학생보호인력의 배치와 제20조의6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조항, 「학교보건법」의 정화구역 관련 조항 등을 통합하여 학교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학교안전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기존의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가칭)」으로 개정하여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안전 관련 조항을 이동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36)]

- 둘째,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안전 관련 조항을 통합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36) 일본은 2008년도에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개정하여 학교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학교안전을 강화함

V. 결론

□ 국가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책무를 지고 있으나, 아직도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학교안전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학교의 건물 밖에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장소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증을 교부받아서 학교에 출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학교에 출입한 외부인이 출입증 패용이나 퇴교를 거부하거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외부인에게 내리는 조치와 관련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 학교의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청장년층이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여 학생보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에 설치한 CCTV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CCTV를 화소가 높은 고성능 CCTV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지방자체단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진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건물 내에 CCTV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와 시설을 심의하기 위한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화구역 내의 유해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정화구역 내의 유해시설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학교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시설은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 정화구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안전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학교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학교안전 관련 법률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가칭)」으로 개정하는 방안과 학교안전 관련 법률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그 동안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경향이 있었음

○ 따라서, 학교의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참고문헌

감사원,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주요사업)」, 『감사결과보고서』, 2012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2012년 1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2012년 1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2012년 1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2012년 11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정화구역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학교보건법 부패영향평가」, 2010년 6월.

경인일보, 「전담 경비원 없는 학교 대다수 외부인 침입 범죄 그대로 노출」, 2013년 7월 17일.

박홍근의원실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2013년 9월 3일.

성백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년 8월 22일.

손애리 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년 12월.

송민영, 「일본의 학교 안전 관련 동향 및 안전교육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2010년 8월 26일.

이혜숙,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안전 관리방안 연구- CCTV 및 학교보안관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012년.

연합뉴스, 「지켜지지 않는 '안전학교 정책' 여고생 납치 불렀다」, 2013년 5월 8일.

오정한, 「소년구금제도와 학교경찰배치제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년 7월 11일.

정귀영, 「학교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7권 제1호, 2011년.

조선일보, 「서울 중학교 379곳, 유해업소 2144개에 '포위'」, 2013년 3월 21일.

KBS, 「학교 CCTV, 어두운 밤 시간대 무용지물」, 2013년 6월 20일.

Ann Cavoukian, 「Guideliens for Using Video Surveillance Cameras in Schools」,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Ontario, 2009년 7월.

Johanna Wald & Lisa Thurau, 「How Educators and Police Can Work Together More Effectively to Preserve School Safety and Protect Vulneerable Students」, A CHHIRJ Policy Brief, Institute for Race & Justice, 2010 March.

Nathan James 외, 「School Resource Officers: Law Enforcement Officers in Schools」, CRS Report for Congress, June 23, 2013, pp.1-27.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s: 627.3, 627.4 (최종 검색일: 2013.10.15.) <http://law.onecle.com/california/penal/627.3.html>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COPS) program, 42 U.S.C. §3796dd-8. (최종검색일: 2013.10.15.) <http://www.gpo.gov/fdsys/pkg/USCODE-2010-title42/pdf/USCODE-2010-title42-chap46-subchapXII-E-sec3796dd-8.pdf>

Banning High School 홈페이지 Visitor Policy, (최종 검색일: 2013.10.15.)
<http://www.banninghs.org/apps/pages/index.jsp?uREC_ID=119108&type=d>

Justice Policy Institute, 「Education Under Arrest: The Case Against Police in Schools」, (최종검색일: 2013.11.25.)
<http://www.justicepolicy.org/uploads/justicepolicy/documents/educationunderarrest_executivesummary.pdf>

Jessica Shepherd, 「Someone to watch over you」, The Guardian, 2009년 8월 4일, (최종 검색일: 2013년 11월 25일)
<http://www.theguardian.com/education/2009/aug/04/schools-cctv-surveillance>

Welshampton Church of England Primary School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13.10.15.)
<http://www.welshampton.shropshire.sch.uk/index_htm_files/Visitors%20policy%20November%202010.pdf>

Yonkers Public Schools, 「Code of Conduct」, pp.40-41. (최종 검색일: 2013.10.15.)
<http://www.yonkerspublicschools.org/docs/about/code-of-conduct/coc_eng.pdf>

[부록 1 학교안전 관련 입법논의 현황]

□ 학교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음

○ 학교안전 관련 법률 중에서 본 보고서에 논의하고 있는 ① 학교 CCTV, ② 학교의 출입자 관리 및 학교 안전 관련 업무 담당 인력, ③ 학교 주변 유해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제·개정하는 법률안을 대상으로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을 분석함

- 2013년 10월 기준으로,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2건이며, 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은 없음
- 2013년 10월 기준으로,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9건이며, 학생보호인력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3건임
- 2013년 10월 기준으로,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22건으로, 정화구역과 관련된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은 총 9건이 발의됨
- 2013년 10월 기준으로,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2건이며, 본 보고서와 관련이 있는 규정을 개정·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은 없음
- 20103년 10월 기준으로, 박인숙의원(2012.7.3.)이 발의한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과 이학재의원(2012.9.25.)이 발의한 「교권보호법」에 학교출입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학교안전과 관련이 있는 학생보호인력과 학교전담경찰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은 3건이 제출되어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학생보호인력 관련 내용과 의결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의결상황
김명연 의원	2012.8.31.	학생보호인력 배치의 의무화, 학생보호인력의 민간전문가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소관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박혜자 의원	2012.9.3.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학생보호인력의 채용절차, 연수 등 운영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수정가결 (2013.6.27.)
정우택 의원	2012.11.12.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소관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박인숙 의원	2012.11.27.	학교의 장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때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소관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학교 주변 정화구역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률안은 9건임 일부개정 법률안 중에서 학교 주변 정화구역 관련 내용과 의결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의결상황
박기춘의원	2012.6.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금지시설에 장례식장을 포함함	소관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김태원의원	2012.8.29.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금지시설에 도시형공장을 포함함	소관상임위 심사
우원식의원	2012.11.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감염병원·감염병격리병사·격리소,멸균분쇄기 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시설 등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200미터를 초과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소관상임위 접수
이명수의원	2013.2.1.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200미터의 제한범위를 500미터로 변경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소관상임위 접수
이석현의원	2013.2.5.	연구목적으로 학교 구내에 설치된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접수
유기홍의원	2013.3.26.	환경부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서 기술개발을 완료한 멸균분쇄시설의 설치·운영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운영을 허용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접수
정희수의원	2013.5.3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상임위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의결상황
		장으로 하여금 1년에 2회 이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행위 및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접수
김정록의원	2013.8.9.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함	소관상임위 접수
정청래의원	2013.9.17.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접수

□ 박인숙의원(2012.7.3.)이 대표로 발의한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과 이학재의원(2012.9.25.)이 대표로 발의한 「교권보호법」에는 학교출입 절차와 관련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박인숙의원(2012.7.3.)이 대표로 발의한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과 이학재의원(2012.9.25.)이 대표로 발의한 「교권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결 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과 「교권보호법안」의 학교출입 관련 내용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의결상황
박인숙의원	2012.7.3	외부인에 대한 학교 출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외부인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출입할 때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심사
이학재의원	2012.9.25	외부인에 대하여 학교출입 절차를 정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심사

[부록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부록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부록 4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7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법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만화가게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담배자동판매기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의 장을 정화위원회에 출

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8.13>
⑧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화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8.13>
⑨ 학교의 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요청받은 정화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2.8.13>]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화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2.8.13.>]

제7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의2. 정화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해당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7조의3에서 이동 <2012.8.13>]

[NARS----------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6호	로컬푸드 직매장 전개 현황과 활성화 전략	2013.12.13	배민식
제25호	과학관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2013.12.2	권성훈
제24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식현황과 질 제고방안	2013.3.28	장영주
제23호	외해양식어업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2012.11.7	박충렬 배민식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27호

발 간 일	2013년 12월 27일
발 행	고현욱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70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005-9558
발간등록번호 31-9735031-000663-14

Ⓒ 국회입법조사처, 2013

현장조사보고서 제27호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

-- 출입관리 · 시설관리 · 위해환경관리를 중심으로-

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

ISSN 2005-9558